



노인학대 신고,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

☑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	 정서적 학대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	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	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☑ 노인학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나요?

노인학대 발견 즉시 **경찰서 112**, 혹은
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
※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
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


노인보호 전문기관이란?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·도에서
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
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
• 이동상담 실시, 언론홍보, 학술행사,
캠페인, 카툰 및 사진전시회



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
• 노인학대 예방교육
• 노인인권 교육



노인인권 보호사업
• 노인인식개선사업
• 효행교육



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• 긴급보호 및 의식주 제공
•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
※ 보호기간 3개월 외 1개월 이내 연장가능



협력체계 구축사업
• 자문위원회, 사례판정위원회 운영
•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
• 후원, 자원봉사 사업



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
• 전문상담 서비스
• 일시보호, 의료지원
• 법률지원, 사회복지서비스 연계

노인학대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
24시간 상담 1577-1389 또는 129